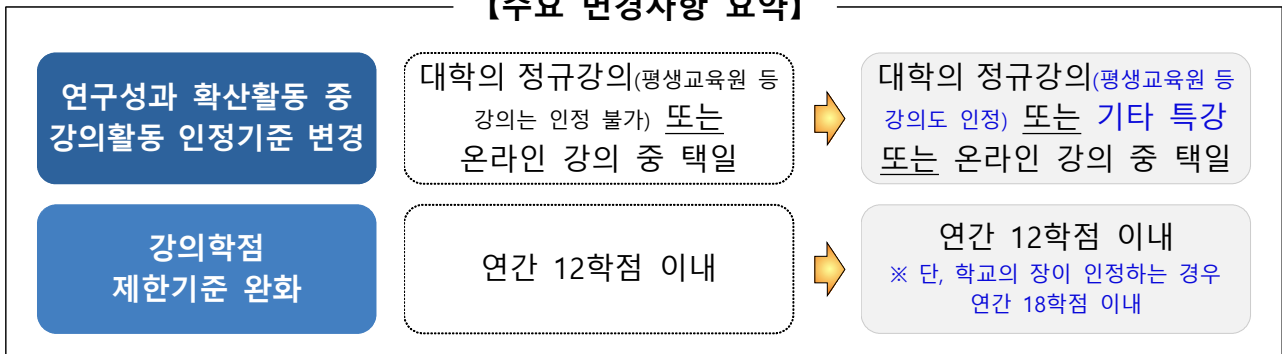


# 2020~2023년 선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연구성과 확산활동(강의) 및 강의학점 제한기준 변경 안내

(’24.2.27.,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 【주요 변경사항 요약】



## 1. 추진배경 및 근거

### ○ 추진배경

-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대학 강의 개설의 어려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강의 활동 허용
  - 타법(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의시수 관련 지침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수행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강의활동의 기회 확대
- ※ 강의활동 실태조사(’23.5~8월, 총 865명 대상) / 연구자 만족도 조사(’23.10~11월, 총 432명 대상)

### ○ 근거

- ’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24.1월)
- ’24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세부시행계획(’24.2월)

## 2. 변경사항 안내

### 1) 연구성과 확산활동 중 강의활동 인정기준 \* 학술대회 발표 인정기준은 변동사항 없음

#### ○ [대학 강의] 또는 [기타 특강] 또는 [온라인 강의] 중 택일하여 수행

- (대학 강의: 5년간 1학기 이상)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단독으로 1학기 이상 강의
  - ※ 대학 내 평생교육원 및 미래교육원 등 강의도 인정 가능
  - ※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개설하는 강의, 기존에 개설되었던 강좌에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한 강의 모두 가능
- (기타 특강: 5년간 1회 이상) 지자체 및 중·고교, 민간기관 등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1회 이상의 특강
  - ※ 강연 시간은 1회 기준 90분 이상(강의자료 및 강의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필수)

- (온라인 강의: 5년간 1회 이상) K-MOOC 또는 KOCW 강의 후 해당 링크를 제출 하되, K-MOOC 또는 KOCW 강의가 어려운 경우, 강의 동영상 촬영 후 재단 으로 제출도 가능

※ 단, 동영상 제출의 경우, 1회는 15분 이상 강좌 8차시 이상으로 하되, 총 강연시간(120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제출되는 강의 동영상은 외부(일반인 포함)로 공개될 수 있으며, 강의 교안은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 필수

## 2) 강의학점 제한기준 완화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선정자는 연간\* 12학점(계절학기 제외\*\*)을 초과하여 대학 강의를 할 수 없음
  - \* “연간” 기준: 선정연도 2학기부터 차년도 1학기까지
  - \*\* 계절학기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강의하여야 함
- ※ 단, 학교의 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대학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에 한해(해당 학칙 등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연간 18학점 이내로 강의할 수 있음
- ※ 상기의 강의학점 제한규정은 자교·타교 강의 및 대학원 강의를 모두 포함함

## 3. 자주 묻는 질문(FAQs)

### 1) 연구성과 확산활동 중 강의활동

- Q1. 연구성과 확산활동 중 “강의활동”은 제시된 활동들을 모두 해야 하나요?
  - A1. 그렇지 않습니다. 총 5년의 연구기간 중, ①대학 강의, ②기타 특강, ③온라인 강의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
- Q2. 대학 강의를 하는 경우, 1학기 내내 본 연구내용만 가지고 강의를 해야 하나요? 기존에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 수행 중인 연구 내용을 일부만 반영하는 건 안되나요?
  - A2. 연구하시는 내용만으로 1학기 내내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학기 동안 진행하는 강의내용 중에, 수행 중인 연구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있는 경우, 연구 내용을 1주 분량이라도 반영하시면 인정됩니다.
- Q3. 강의활동에 따른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A3. 강의계획서(강의제목 및 강사명, 강의일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부와, 해당 강의에 대한 강의경력증명서(정해진 양식 없음. 강의한 대학으로부터 발급 받아 구비) 1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Q4. 연구성과 확산활동에 대한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A4. 연구성과 확산활동 보고 시기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와 동일합니다. 해당 활동내역은 추후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따라 기재하셔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증빙서류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강의학점 제한기준 완화

○ Q1. 변경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선정자에게 적용되는 강의학점의 제한규정에서 “연간” 기준은, 선정연도 2학기부터 차년도 1학기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년도 1, 2학기가 아님). 따라서 '24년도 1학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24년도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즉, '23.2학기부터 '24.1학기까지는 연간 12학점 이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Q2. 학교 측 사정으로 강의학점이 약간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강의학점 초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강의학점 초과 시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2. 강의학점 제한 규정에 대해 초과를 허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례도 없습니다. 강의학점 초과 시 원칙적으로는 협약 위반의 하나로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한 조치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고, 연구자별 사유서 및 소명서 등을 접수받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Q3. 올해부터는 연간 18학점까지 강의가 가능해진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어떤 건가요?

- A3. 우선, 연간 강의학점 제한 규정은 예년과 같이 여전히 12학점 이내입니다. 다만, 올해 2학기부터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연간 18학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선정자는 각 대학의 부설연구소에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발령되는 직급의 명칭은 대학별 직제규정 등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대학들은 강의학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어, 직위(또는 직급)별로 강의 학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의학점 관련 내규에서 A유형 선정자가 발령받은 직급에 대해, 그 직급에서 당초 정했던 강의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며, 추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강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이더라도 1개 대학의 규정만으로도 상기의 내용들이 모두 증명 가능하다면, 굳이 모든 대학의 예외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연간 18학점 이내로 강의를 진행하시고, 추후 재단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인정요건                                                                                                                                                                                                                                                                                                                                                                                                                                                                                                                                                                                                                                                                                                                                                                                                                                  | 증빙 구비서류                                                                                                                                                                                                                                                                                                                                                                                                                                                                                               |
|---------|---------------------------------------------------------------------------------------------------------------------------------------------------------------------------------------------------------------------------------------------------------------------------------------------------------------------------------------------------------------------------------------------------------------------------------------------------------------------------------------------------------------------------------------------------------------------------------------------------------------------------------------------------------------------------------------------------------------------------------------------------------------------------------------------------------------------------------------|-------------------------------------------------------------------------------------------------------------------------------------------------------------------------------------------------------------------------------------------------------------------------------------------------------------------------------------------------------------------------------------------------------------------------------------------------------------------------------------------------------|
| 강의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대학 강의, ②기타 특강, ③온라인 강의 중 택일하여 실시</li> </ul> <p>1) 대학 강의 인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1학기 이상</li> <li>- 고등교육법 상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대학 내 평생교육원 및 미래교육원 등에서 단독으로 1학기 이상 진행한 강의</li> <li>※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개설한 강의, 기존에 개설되었던 강좌에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한 강의 모두 인정 가능</li> </ul> <p>2) 기타 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1회 이상</li> <li>- 지자체 및 중·고교, 민간기관 등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강의</li> <li>- 강의 시간은 1회 기준 90분 이상</li> </ul> <p>3) 온라인 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1회 이상</li> <li>- K-MOOC 또는 KOCW 강의 후 해당 링크를 제출하되, K-MOOC 또는 KOCW 강의가 어려운 경우, 강의 동영상 촬영 후 재단으로 제출도 가능</li> <li>※ 단, 동영상 제출의 경우, 1회는 15분 이상 강좌 8차시 이상으로 하되, 총 강연시간(120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제출되는 강의 동영상은 외부(일반인 포함)로 공개될 수 있으며, 강의 교안(시차별 강의 내용 포함)은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 필수</li> </ul> | <p>1) 대학 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계획서 1부(강의제목 및 강사명, 강의일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 <li>- 강의경력증명서 1부(정해진 양식 없음. 해당 대학으로부터 발급받아 구비)</li> </ul> <p>2) 기타 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자료 1부(ex. PDF 등)</li> <li>- 강의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1부</li> </ul> <p>3) 온라인 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OOC 또는 KOCW: 없음</li> <li>※ 해당 링크만 제출</li> <li>- 강의 동영상: 강의 동영상 파일(MP4, WMV 등) 1부 (강의제목, 강사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강연자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무방</li> </ul> |
| 학술대회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제학술대회 또는 ②국내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자료 참여 (5년간 2회 이상)</li> </ul> <p>1) 국제 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국 4개국 이상, 구두발표 논문 10건 이상,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단, 국내 개최시에는 1/3 이상)</li> <li>- 구두발표만 인정 (포스터 발표는 불인정)</li> </ul> <p>2) 국내 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의 (우수)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발행기관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li> </ul>                                                                                                                                                                                                                                                                                                                                                                                                                                             | <p>【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공통】</p> <p>* ①, ② 모두 구비</p> <p>① 학술대회 프로시딩/팜플릿/포스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대회명, 개최기관(학회 등), 개최일시/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 학술대회의 경우 전체 발표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li> <li>※ 온라인 개최의 경우, 상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각 화면을 캡처하여 구비</li> </ul> <p>② 학술대회 발표자료(PPT 또는 PD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대회 발표자료에는 사사표기 의무 없음</li> </ul>                                                                                                                                |